
건설공사 안전점검기관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작성지침

2020. 12

한국수자원공사

건설공사 안전점검기관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작성지침

2020. 12. 신규

□ 목 차 □

제1장 일반사항	1
제 1 절 목 적	1
제 2 절 과업의 개요	1
제 3 절 작성요령	1
제 4 절 제출안내	2
제 5 절 기타사항	2
제2장 작성지침	3
제 1 절 일반사항	7
제 2 절 참여기술인	9
제 3 절 유사용역 수행실적	15
제 4 절 신용도	17
제 5 절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21
제 6 절 업무중첩도	24
제 7 절 가·감점	26
제 8 절 기타	28
[서 식]	
양식 #1(사업수행능력 평가서)	5
양식 #2(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표)	30

제 1 장 일 반 사 항

제 1 절 목 적

본 지침은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하여 안전점검기관을 선정하는데 필요한 사업수행 능력 평가서 관련사항을 기술하였으며, 본 지침에 따라 자기평가서·사업수행능력 평가서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 2 절 과업의 개요

가. 과업의 내용 : ○○ 건설공사 제○○공구 정기안전점검

나. 과업수행기간 : 착수일 ~ 준공일 이후 3개월(안전점검종합보고서 제출 → 한국시설안전공단)

제 3 절 작 성 요 령

가. 작성요령 : 제 2 장 참조

나. 규격 및 제본

- 1) 규 격 : A4(10절)
- 2) 표 지 : 양식 #1 참조
- 3) 지 질 : ◦ 표 지 - 백색 아트지 (180g/전지)
◦ 내용물 - 백상지
◦ 간 지 - 색지
- 4) 제 본 : 양면 좌철 (무사무선철)
- 5) 글 씨 체 : 일반적인 명조 또는 고딕체
※ 칼라프린트, 색도인쇄 등을 금지할 것

제 4 절 제 출 안 내

가. 제출기한 및 부수

1) 제출기한 : 별도 공고내용 참조

2) 제출부수 : 1부(자기평가서 포함), CD 1매

나. 제출장소 : 별도 공고내용 참조

다. 참가자격 : 별도 공고내용 참조

제 5 절 기 타 사 항

가. 제출기한 내 접수(접수처 도착시간 기준)되지 않은 서류는 일체 인정치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나. 기재된 내용 중 잘못된 사항이나 허위사실이 판명될 경우 또는 평가에 필요한 요구자료를 첨부하지 않았을 경우나 본 작성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는 우리공사에서 임의 처리할 수 있다.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은 작성지침에 기재된 순서대로 작성하되 모든 양식은 우리공사가 제시한 양식에 따라야 하며, 각각의 평가항목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간지에 소재목을 표기하여 구분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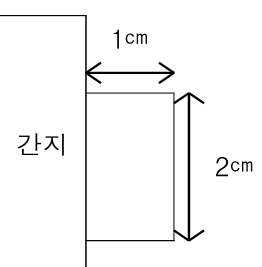
라. 요구하지 않은 일체의 등록증, 자격증 등은 첨부하지 아니한다.

마.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 각 작성항목의 작성기준 시점은 따로 특별히 정하지 않는 한 해당용역 공고일로 한다.

바. 유사용역수행실적,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등의 금액란에 기입하는
금액은 백만원 이하에서 반올림하여 기입한다.

사. **제출증빙서류의 해당사항에 대하여 형광펜으로 표시하고**, 참여기술인의 경력, 실적 및 참여사의 유사용역 실적의 각 항목에 대하여 간지에 옆의 그림과 같이 색인을 부착하여야 한다.

※ 표기문구는 참여기술인은 홍길동(경력), 홍길동(실적)으로 표기한다.



제 2 장 작 성 지 침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

(공고번호, 공 고 명)

2020. 00.

회사명	
전화번호	
FAX번호	
담당자	<u>사무실, 휴대폰, 이메일 필수 기재(담당자를 통해서만 연락)</u>

점 검 기 관 명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 FAX번호, 담당자 기재)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신 한국수자원공사 00사업단장

참조

제목 사업수행능력 평가 자료 제출

○○사업 제1공구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및 초기점검에 참여하고자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붙임 1.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1부.
2.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전자파일(CD) 1부. 끝.

[점검기관명] 대표자 [인]

- 목 차 -

제 1 절 일 반 사 항

1. 일반현황.....()
2.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현황.....()

제 2 절 참 여 기 술 인

1. 참여기술인별 자격.....()
2. 참여기술인별 경력.....()
3. 참여기술인별 실적(건수·금액).....()

제 3 절 유 사 용 역 수 행 실 적

- 유사용역 수행실적(건수·금액).....()

제 4 절 신 용 도

1. 점검·진단 실시결과 평가결과.....()
2.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3. 재정상태 건실도.....()

제 5 절 기 술 개 발 및 투 자 실 적

1. 기술개발실적.....()
2. 투자실적.....()

제 6 절 업 무 중 첩 도

- 현재 수행중인 용역.....()

제 7 절 가 · 감 점

1. 초기점검 평가.....()
2. 별점.....()
3.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제 8 절 기 타

- 보유장비, 프로그램 등 기타.....()

제 1 절 일 반 사 항

1. 일반현황

회 사 명		대 표 자	
주 소		전화번호	
설립년도		사업자 등록번호	

(주) 회사이력, 사업자 등록증 사본 첨부

2.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현황

등록번호		등 록 일	
등록분야	토 목		건 축
	교량 및 터널분야	수리분야	
기술 인력	가목		
	나목		
	다목		

(주) 1. 등록번호 : 지정공고된 해당분야(또는 종합분야) 등록번호

2. 등 록 일 : 지정공고된 해당분야(또는 종합분야) 등록일

3. 등록분야 : 해당분야에 '○' 표기

4. 기술인력 : 해당 기술인 명단 기재(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11 참고)

5.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 사본 및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첨부

6. 종합분야는 모두 표기

제 2 절 참 여 기 술 인

1. 참여기술인별 자격

구 분	성 명	생년 월일	직 위	직무 (전문) 분야	기술 등급	최종 학력 (학위)	자격증 (취득일)	점검(진단) 교육이수 여부	비 고 (증빙서류 page)
사업책임	홍길동	00.00.00	이사	토목 (토질· 지질)	특급	OO대 대학원 (박사)	토질 및 기초 기술사 (‘00.00.00)	이수	
분야 책임1									
분야 참여1									

- (주) 1. 자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 사본 첨부
2. 안전점검기관의 사업책임기술인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른 특급기술인이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안전점검교육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사람이여야 하고, 이에 미달하는 경우 실격처리 한다.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교육 이수
수료증 사본 첨부
4. 비고 : 관련증빙서류 page 모두 기재

2. 참여기술인별 경력

일반 사항	참여분야							
	성명		소속		직위			
경력 요약	건설기술 진흥법	정기안전·정밀안전·초기·공사재개 전 점검					일	
경 력 사 항								
분야	사 업 명	참여기간		참여 (일)	인정 비율 (%)	반영 (일)	발주청 또는 발주자	비 고 (증빙서류 page)
		시작일	종료일					
정기안전		00.00.00	00.00.00	00				
정밀안전								
초기								
공사재개								
건설기술 진흥법	소계							

- (주) 1. 참여분야 :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명시
2. 경력요약
- 「건설기술 진흥법」 관련 점검 경력
 -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초기점검,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 반영일의 합계
3. 경력사항
- 1) 연차순으로 기재
 - 2) 분야는 「건설기술 진흥법」 관련 점검 및 「시설물 안전법」 관련 점검 분야로 구분
 - 3) 참여기간 :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경력증명서의 '기술경력'의 '참여기간'

- 4) 참여(일) :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경력증명서의 '기술경력'의 '인정일'
- 5) 인정비율 : 과업으로 인정하는 분야 및 인정비율은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른다.
- 6) 반영(일) : 참여일수 × 인정비율
- 7) 발주청/관리주체 : 발주청 기재하며 발주청과 관리주체가 다를 경우 발주청 아래에 (관리주체) 명기
- 8) 비고 : 관련증빙서류 page 모두 기재
- 9)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를 첨부하고 경력증명서 해당 항목에는 노란색 형광펜으로 밑줄 그어 표시한다.
 - ※ 경력증명서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받은 것에 한함.

3. 참여기술인별 실적(건수·금액)

일반 사항	참여형태													
	성 명					소 속					직 위			
실적 요약	최근 7년간 해당분야의 점검 실적					건 수				건				
						금 액				백만원				
실 적 사 항														
분야	참여 (건)	용 역 명	계약기간(일) 및 금액(백만원)			참여기간(일) 및 금액(백만원)					발주청 또는 발주자	비 고 (증빙서류 page)		
			계약기간	계약 (일)	계약 금액	참여기간	참여 (일)	참여율 (%)	인정 비율 (%)	참여 금액 (백만원)				
정기 안전	1		00.00.00 ~00.00.00	00	00	00.00.00 ~00.00.00	00	00		00				
정기 안전	2													
정밀 안전	1													
정밀 안전	2													
총계	8													

(주) 1. 참여형태 :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명시

2. 실적요약

1) 대상실적 : 최근 7년간 준공된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 제23조, 제23조,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자체안전점검을 제외한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초기점검,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의 실적

2) 지정 공고일 기준 최근 7년간의 준공된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초기점검,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의 참여 건수 및 금액 합계이며 연차 준공된 용역은 최종 치수 준공 시 1건으로 작성

3. 실적사항

1) 연차순으로 기재

2) 계약기간 및 금액

- 계약기간 : 한국건설기술인 협회 ‘참여기술인의 경력사항 확인서’ 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서 명기한 증빙서류로 확인된 계약기간
- 계약금액 :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에서 명기한 증빙서류로 확인된 계약금액

3) 참여기간·건 및 금액

- 참여기간 :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경력증명서의 ‘기술경력’의 ‘참여기간’
- 참여일 :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경력증명서의 ‘기술경력’의 ‘인정일’
- 참여건 : 점검 분야(정기, 정밀, 초기, 공사재개 전)별 오름차순으로 작성
- 참여율(%) : 계약기간에서 실제 참여한 비율
= 참여일/계약일 [소수이하 한자리까지 산정]
- 인정비율(%) : 과업으로 인정하는 분야 및 인정비율은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른다.
- 참여금액 : 계약금액에서 참여율에 해당하는 금액
※ 참여금액(백만원) = 계약금액×참여비율×인정비율 = 계약금액×참여율(%)×인정비율
[소수이하 한자리까지 산정]

4) 비고 : 관련증빙서류* page는 모두 기재

- * 증빙서류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르며, 증빙서류가 없거나 대상시설물, 계약기간, 금액 등의 실적확인이 곤란한 경우는 실적에서 제외

제 3 절 유 사 용 역 수 행 실 적

1. 유사용역 수행 실적

일반사항		업체명									
실적 요약		최근 5년간 해당분야의 유사용역 수행실적			건 수				건		
					금 액				백만원		
유 사 용 역 실 적 사 항											
분야	년도	용역명	용역 개요	용역 기간	준공 금액 (백만원)	도급 비율 (%)	인정 비율 (%)	실적 건수	실적 금액 (백만원)	발주자	비 고 (증빙서류 page)
정기				00.00.00 ~00.00.00	000	00%		0.0	000		
정기											
정밀											
초기											
초기											
공사 재개전											
총계					000				000		

- (주) 1.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최근 5년간 해당분야의 준공된 실적에 한하며, 연차 준공된 용역은 최종차수 준공시 1건으로 인정함
2. 준공일자 순으로 기재하되, 유사용역의 점검범위 및 증빙서류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을 따른다.
3. 건수는 용역단위로 산정(구조물 단위 아님)
4.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인 경우에는 준공금액란에 전체 계약금액을 기재하고 발주자의 공동도급 계약서 사본을 첨부(증빙서류에 해당사항 확인 가능한 경우 첨부생략 가능)
5.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인 경우에는 실적건수 및 실적금액은 도급비율(참여지분율)에 해당하는 비율로 산정한다.
- 1) 인정비율(%) : 과업으로 인정하는 분야는 및 인정비율은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에 따른다.
- 2) 실적건수 : 1건×도급비율(%)×인정비율
- 3) 실적금액 : 준공금액×도급비율(%)×인정비율

제 4 절 신 용 도

1. 점검 · 진단 실시결과 평가결과

처분 통보일	용역명 (진단기관)	계약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발주청	점검 · 진단 실시 결과 평가결과	비고 (증빙서류 page)

- (주) 1. 점검 · 진단 실시결과 평가결과는 지정공고일로부터 최근1년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 따라 시정 또는 부실의 점검·진단 평가결과 처분을 받은 용역에 대하여 건당 시정처분은 0.3점, 부실처분은 0.7점 감점
2. 한국시설안전공단 평가결과 통보문서 등 증빙서류 첨부

2.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1) 입찰참가제한 및 영업(업무)정지 처분현황

구 분	처분기관	처분을 받은 기간(개월)	처분사유	비 고 (증빙서류 page)
입찰참가제한		YY.MM - YY.MM (개월)		
영업(업무)정지				

- (주) 1. 안전점검기관이 최근 1년간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명시된 점검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 제한처분 및 영업(업무)정지를 받은 현황 기입(공고일 기준)
2. 법원에서 효력정지등 처분계류중인 사항 또는 취소처분사항 등의 소명자료가 있을 경우 이를 기재하고 증빙서류 첨부
3.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입찰참가제한 확인서”,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건설기술용역 실적 확인서” 및 나라장터 부정당업자 조회결과 등 첨부
- ※ “입찰참가제한 확인서”, “건설기술용역 실적 확인서” 및 나라장터 부정당업자 조회결과 등은 공고일 이후에 발급된 서류에 한함
- ※대상 : 토목분야, 건축분야를 포함한 모든분야

2) 참여기술인의 기술자격 또는 업무정지 처분현황

참여기술인명	자 격	처분기관	정지기간(개월)	처분사유	비 고 (증빙서류 page)
			YY.MMFY.MM(개월)		

- (주) 1. 참여기술인이 최근 1년간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명시된 점검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현황 기입(공고일 기준)
2. 법원에서 효력정지 등 처분 계류중인 사항 또는 취소처분사항 등의 소명자료가 있을 경우 이를 기재하고 증빙서류 첨부
- ※대상 : 토목분야, 건축분야를 포함한 모든분야

3. 신용평가등급

회사명	평가받을 항목	신용평가등급	비 고 (증빙서류 page)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중 택1)		

- (주) 1.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한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확인서**” 첨부. 단, 지정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확인서에 한함
2.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이 명시
되어야 함

제 5 절 기 술 개 발 투 자 실 적

1. 개발실적

구분	지정(등록)번호 지정(등록)일	지정(등록)건명	출원자 수	내 용	활용용역명	활용금액 (백만원)	비 고 (증빙서류 page)
건설 신기술				“간략설명”			
	계	건					
건설 기술 특허				“간략설명”			
	계	건					

(주) 1. 건설신기술

- 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보호기간 내에 있으며, 용역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만 인정
- 나) 신기술 활용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 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의 신기술 활용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2. 건설기술 특허

- 가) 용역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나) 발명진흥법 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에서 증빙 발급한 ‘특허 활용실적 증명서’ 등 사용실적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인정

- 3. 신기술의 경우 지정증서 사본을, 특허의 경우 특허청장이 확인한 등록원부 등본이나 관련증서 사본 등으로 최초 출원인 및 지정(등록)일 확인 가능한 경우 유효함
- 4. 신기술, 특허권의 기재순서는 가장 최근 등록·고시·지정된 순서부터 기재
- 5. 동일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를 각각 받은 경우에는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한다.
- 6. 2인 이상이 최초 출원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에는 해당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2. 투자실적 (최근 3년간)

년 도	건 명	건설기술개발 투자금액 (백만원)	당해연도 건설부문 총매출액 (백만원)	건설기술 개 발 투자실적 (%)	비 고 (증빙서류 page)
계					

- 주) 1. 년도구분은 정부회계년도를 기준으로 함
2. 건설기술개발 투자실적은 최근 3년간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건설기술개발 투자금액(재무제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에 대한 비율로 평가
 ※ 단 회사 설립년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 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3.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자료를 미제출하거나 확인 불가능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 해당 업체의 실적은 불인정
4. 기술개발투자금액은 최근 3년간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1조, 제12조 등에 의한 투자금액으로 신고된 금액으로서 관할세무서장이나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확인을 받은 것에 한함
5. 재무제표는 관할세무서장이 발행한 표준재무제표 첨부
6. 특허의 출원인(법인대표자와 법인과의 관계는 동일하게 인정)과 등록인이 상이한 경우와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 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투자실적으로 인정함

제 6 절 업 무 중 복 도

1. 현재 수행중인 용역

용역명	과업개요	계약기간 (잔여일)	계약금액 (백만원)	발주청 (부서)	참여기술인	비고 (증빙서류 page)
		YY.MMYY.MM (DD)				

- (주) 1.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라 우리공사에서 수행중인 안전점검에 한하여 중복 참여정도를 평가한다.
- ※ 참여기술인란에는 사업책임기술인 및 분야별책임기술인을 꼭 기재하고 업무 중복이 없는 경우 분야 좌측에 “해당사항 없음” 표기
(만약, 제출한 평가자료에 오류나 누락사항이 확인된 경우 평가점수는 0점 처리한다.)

제 7 절 가 · 감 점

1. 별 점

구분	회사명 / 성명	누계평균별점	감점	비 고 (증빙서류 page)
계				
용역사				
기술인				

(주)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제5항 관련 별표 8의 '5. 별점측정기준'의 '나'목과 '다'목에 해당하는 업체 및 기술인에게 부과되는 별점으로 2년간의 누계평균별점에 따라 해당점수를 적용한다.

2. 별점내역서 증빙서류 첨부

2.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용역사	최근 1년간 신규 고용인원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	신규 고용율(%)	가점	비 고 (증빙서류 page)

(주) 1. 신규건설기술인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2.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이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직원(월말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

3.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인원(입찰공고일 전월기준)/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

4.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제 8 절 기 타

3. 보유장비, 프로그램 등 기타

가. 장 비

장 비 명	규 격	용 도	활용방법(구체적 기술)	비 고

(주) 안전진단용 장비(계측 시험, 비파괴 검사 등)에 한함

나. 프로그램

프로그램 명칭	용 도	활용방법(구체적 기술)	비 고

(주) 구조해석 및 안전진단 프로그램에 한함

다. 기타 필요한 자료

자 료 명	용 도	활용방법(구체적 기술)	비 고

(주) 본 과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기재

(양식 #2)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표

(공고번호, 공 고 명)

2020. 00.

회사명	
전화번호	
FAX번호	
담당자	사무실, 휴대폰, 이메일 필수 기재(담당자를 통해서만 연락)

안전점검기관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표

평 가 항 목					배 점	자기평가점수	발주청평가
총 계					100		
참여기술인	계				45		
	사업 책임기술인		소계		18		
			등급		-		
			경력		8		
			실적	건수	5		
				금액	5		
	분야별 책임기술인		소계		18		
			등급		2		
			경력		6		
			실적	건수	5		
				금액	5		
	분야별 참여기술인		소계		9		
			등급		2		
			경력		3		
			실적	건수	4		
				금액	-		
유사용역 수행실적	계				25		
	참여실적		금액		13		
			건수		12		
신용도	계				10		
	점검진단실시결과 평가결과				4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				3		
	재정상태 건설도				3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계				10		
	기술개발실적				2		
	투자실적				8		
업무중첩도	계				10		
	업무중복도				10		
가·감점	계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0.1 ~ +0.3		
	별 점				-3		

가. 참여기술인

1) 사업책임기술인(18점)

○ 등급

배 점	기술인 등급	점 수
-	- 토목·건축 직무분야 특급기술인	

○ 경력 (8점)

배점	경력		배점기준	점 수
8	건설기술 진흥법 관련 점검	일	6년 이상 : 8.0점 5.5년 이상 6년 미만 : 7.2점 5년 이상 5.5년 미만 : 6.4점	
	소계	일/365= 년	4년 이상 5년 미만 : 5.6점 4년 미만 : 4.8점	

○ 실적(건수) (5점)

배점	경력		배점기준	점 수
5	건설기술 진흥법 관련 점검 (계)	건	12건 이상 : 5.0점 9건 이상 12건 미만 : 4.5점 6건 이상 9건 미만 : 4.0점 3건 이상 6건 미만 : 3.5점 3건 미만 : 3.0점	

○ 실적(금액) (5점)

배점	금액(백만원)	배점기준	점 수
5		6억 이상 : 5.0점 5억 이상 6억 미만 : 4.5점 4억 이상 5억 미만 : 4.0점 3억 이상 4억 미만 : 3.5점 3억 미만 : 3.0점	

2) 분야별 책임기술인(18점)

○ 등급 (2점)

배 점	기술인 등급	점 수
2	- 토목·건축 직무분야 특급기술인 : 2.0점 - 토목·건축 직무분야 고급기술인 : 1.5점 - 토목·건축 직무분야 중급기술인 : 1.0점 - 토목·건축 직무분야 초급기술인 : 0.5점 - 기타 : 0점	

○ 경력 (6점)

배점	경력		배점기준	점 수
6	건설기술 진흥법 관련 점검	일	5년 이상 : 6.0점 4.5년 이상 5년 미만 : 5.4점 4년 이상 4.5년 미만 : 4.8점 3년 이상 4년 미만 : 4.2점 3년 미만 : 3.8점	
	소계	일/365= 년		

○ 실적(건수) (5점)

배점	경력		배점기준	점 수
5	건설기술 진흥법 관련 점검 (계)	건	9건 이상 : 5.0점 6건 이상 9건 미만 : 4.5점 3건 이상 6건 미만 : 4.0점 2건 이상 3건 미만 : 3.5점 2건 미만 : 3.0점	

○ 실적(금액) (5점)

배점	금액(백만원)	배점기준	점 수
5		5억 이상 : 5.0점 4억 이상 5억 미만 : 4.5점 3억 이상 4억 미만 : 4.0점 2억 이상 3억 미만 : 3.5점 2억 미만 : 3.0점	

3) 분야별 참여기술인(9점)

○ 등급 (2점)

배 점	기술인 등급	점 수
2	- 토목·건축 직무분야 고급기술인 : 2.0점 - 토목·건축 직무분야 중급기술인 : 1.5점 - 토목·건축 직무분야 초급기술인 : 1.0점 - 기타 : 0점	

○ 경력 (3점)

배점	경력		배점기준	점 수
3	건설기술 진흥법 관련 점검	일	4년 이상 : 3.0점 3년 이상 4년 미만 : 2.7점 2년 이상 3년 미만 : 2.4점 1년 이상 2년 미만 : 2.1점 1년 미만 : 1.8점	
	소계	일/365= 년		

○ 실적(건수) (4점)

배점	경력		배점기준	점 수
4	건설기술 진흥법 관련 점검 (계)	건	6건 이상 : 4.0점 4건 이상 6건 미만 : 3.6점 2건 이상 4건 미만 : 3.2점 1건 이상 2건 미만 : 2.8점 1건 미만 : 2.0점	

나. 유사용역 수행실적

1) 금 액 (13점)

실적금액	7억 이상	7억 미만 5억 이상	5억 미만 3억 이상	3억 미만 2억 이상	2억 미만	점수
점 수	13	11.7	10.4	9.1	7.8	

2) 건 수 (12점)

참여건수	10건 이상	10건 미만 8건 이상	8건 미만 6건 이상	6건 미만 4건 이상	4건 미만	점수
점 수	12	10.8	9.6	8.4	7.2	

※ 유사용역 수행실적 건수 및 금액 (최근 5년간)

☐ 업체명

수행년도	용역실적(건수)				용역금액 (백만원)
	정기안전 점검(A)	정밀안전 점검(B)	초기점검(C)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D)	
2015					
2016					
2017					
2018					
2019					
합 계	A + B + C + D = ()건				

다. 신용도

1) 점점·진단 실시결과 평가결과(국토교통부) (4점)

참여업체	평가내용 (A)	건수 (B)	감점 (C=A×B)	감점 계 (a)	점수 (4-a)
	시정 (-0.3/ 건)				
	부실 (-0.7/ 건)				

2)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 (3점)

구분	처분기간		지분율(%)	감점	점수
수행 기관	입찰참가제한기간 또는 영업(업무)정지 기간 (1개월 미만은 1월로 계산)	: 개월		-0.2점/1개월	
기술인	기술자격 또는 업무정지기간 (1개월 미만은 1월로 계산)	: 개월	미교려	-0.2점/1개월	
				합계	

3) 재정상태 건실도 (3점)

용역사	신용평가 등급	등급점수

※ 배점표

구분	신용평가등급			미제출
회사채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
기업어음	A3-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	-
기업신용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
점수	3.0	2.8	2.1	0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 기술개발실적 (2점)

구분	건명	건당 점수(A)	출원자수(B)	점수 (A/B)
건설 신기술		1.0		
		1.0		
특허		0.6		
		0.6		
합 계				

2) 투자실적 (8점)

산식	$\frac{\text{최근3년간 건설기술개발투자액 합계}}{\text{최근3년간 건설부문총매출액 합계}} \times 100$	점수
비율	(/) $\times 100 =$ %	

※ 배점표

구분	3.0%이상	3.0%미만 2.5%이상	2.5%미만 2.0%이상	2.0%미만 1.5%이상	1.5%미만
점수	8.0	7.2	6.4	5.6	4.8

마. 업무중복도

구 분	우리공사에서 수행하는 안전점검명	감점	점수
참여업체		-3/건당	
사업 책임기술인		-1/건당	
분야별 책임기술인		-1/건당	

바. 가감점

1) 별점 (-3점)

① 참여업체

참여업체	누계평균별점	감점

② 참여기술인

구 분	누계평균별점	감점
사업책임기술인		
분야 책임기술인		
분야 참여기술인		

③ 별점합계

구 분	①참여업체	②참여기술인	별점 계	감점
점수				

※ 배점표

별점	1점 이상 2점 미만	2점 이상 5점 미만	5점 이상 10점 미만	10점 이상 15점 미만	15점 이상 20점 미만
감점	-0.2	-0.5	-1	-2	-3

2) 건설기술인 신규고용(+0.3점)

용역사	최근 1년간 신규 고용인원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	신규 고용율(%)	가점

- (주) 1. 신규건설기술인이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2.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이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직원(월말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
3.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인원(입찰공고일 전월기준)/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